##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80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 염태영 · 이해식 · 황명선

김준혁 · 김우영 · 백혜련

김영진 · 김남근 · 김승원

권칠승・박 정・박주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장소가 소음대책지역 내에 위치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보상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미

치지 못하여 보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책정하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주민들 중"을 "주민(소음대책지역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 중"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 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2제1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소음영향도를"을 "소음영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한 필지의 경계.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

킬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제7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소음대책사업
- 6. 주민지원사업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 4. 그 밖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 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방부렁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 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실제 거주기간·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및 제14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	5
책지역 <u>주민들 중</u> 소음피해가	주민(소음대책지역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	내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u> </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7. "소음대책사업"이란 군용비
	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으로 제7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u>&lt;신 설&gt;</u>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
	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

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20 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 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 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신 설>

### <신 설>

② ~ ④ (생 략)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

시 등) ①
소음영
향도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계를
<u>.</u>
1. 도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
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속
한 필지의 경계.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비도시지역: 촌락의 생활 형
태에 따른 경계와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5. (생략)

③ • ④ (생 략)

<u><신</u> 설>

- \_\_\_\_\_
- 1. ~ 4. (현행과 같음)
- 5. 소음대책사업
- 6. 주민지원사업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계획 수립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 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u>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u> 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 <신 설>

### 者)시설

- 4. 그 밖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 격장의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아시행하여야 한다.
  -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 (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 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 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 ② ~ ⑤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 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 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 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주 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실제 거주기간·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 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 다.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② ~ ④ (생 략)

의	설치	및	기능)	1	

- 1. ~ 4. (현행과 같음)
- 5.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